

현안분석 94-4

안전관계법령의 현황과 개선방안

1994. 12

연구자 : 조정찬(법제처 법제관)
임병수(법제처 법제관)

한국법제연구원

목 차

I. 서론	5
II. 안전관계법제개관	6
III. 현행안전관련법제의 문제점	24
IV. 안전관계법령의 개선방안	39
V. 결론	45
※ 부록	47

I. 서론

최근에 일어난 성수대교붕괴사고·마포도시가스폭발사고 및 충주유람선화재 사고 등은 그 전에 있었던 구포열차사고·아시아나항공기추락, 서해페리호침몰 등 대형참사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모든 국민에게 안전도에 관한 의구심과 함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고들은 1차적으로 당해 시설물 내지 설비들을 운영·관리하는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가 고도산업화로 진입하고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교통인구 등 시설이용자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체계나 시설투자 등이 여기에 따라가지 못한 점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한 60년대 이후 우리가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짧은 기간내에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안전관리에는 소홀하였던 결과라고 하겠으며, 처음부터 부실하게 시공된 경우도 있었지만 약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시설을 개체 보수하는데 관심을 가질만한 여력을 갖지 못하였던 것도 뼈아픈 반성을 요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고를 계기로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결의를 새로이 하였으며 각종 시설의 안전도를 점검하고 이를 보수함과 아울러 이를 위한 예산의 확보와 인력의 확충, 운영체계의 정비 등 각 방면에 걸쳐 원점에서부터 여러가지 보완과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값비싼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마무리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인재」(人災)로 인한 고통과 손실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도적 측면에서 현행 안전관계법령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미비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안전관계법제개관

1. 법제의 변천추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존재이유 내지 책무라 할 수 있다.

고대국가 이래 근세 야경국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국가목표는 국방·치안 등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과 더불어 일관성있게 유지되어 왔지만, 오늘날과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추구라는 보다 적극적인 목표와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를 국가의 기본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또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령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서 형법에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행위를 처벌하고, 이러한 위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이를 뒷받침하는 민·형사관계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형사처벌 내지 손해배상이라는 사후적 대처방법으로서는 충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수 많은 안전관계법령이 양산되고 있다. 즉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근절시킬만한 위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이미 가해진 위해로 야기된 손해(예컨대 죽은 사람의 생명 또는 부러진 팔다리)가 회복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위해행위가 일어날 소지를 사전에 철저히 봉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안전관계법령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대부분의 행정법령이 사후적 수습으로 충분하지 못한 단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사전예방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그 결과 행정법령이 급증하고 있는 바, 이들 법령에 의할 경우 법령의 수규자(수규자들은 종전의 사후수습에 드는 노력과 비용

보다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환경관계법령에서는 사고 내지 공해를 방지하는데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 사고 내지 공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불필요한 낭비로 비쳐질 소지도 있는 것이다) 사전예방을 의도하고 있는 안전관계법령들은 또한 그 수단으로서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역할이 증대하는 행정국가화 경향과도 관련을 맺고 있다.

2. 안전관계법령의 입법체계

안전이라는 개념은 위험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관계법령은 각종 위험 또는 사고로부터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으로 볼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위험 또는 사고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재해라고 할 수 있는 바, 재해는 다시 천재(天災)와 인재(人災)로 나눌 수 있다.

천재란 태풍·해일·폭우 등 기상현상과 지진·산사태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야기된 재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재란 사람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설비 및 그 관리·운영체계의 잘못에서 비롯된 재해라고 할 수 있으나 자연현상에 대한 대응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한다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제외하고는 일용 인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안전관리법령체계는 천재까지를 포함한 모든 재해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특히 인재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재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교통수단, 즉 항공기·선박·기차·자동차 등의 운행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재해와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즉 공항·항만·철도 및 지하철·도로교량 등 교통시설과 전기·수도·가스·난방·통신·원자력과 건물·하천·댐 등 기타의 영조물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재해,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순수한 자연현상으로 야기되는 재해가 있다. 또한 특수한 유형의 재해로서 ①특정인에게 고용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로서 산업재해와 ②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장기간 동안에 축적되고 그 영향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장

기간 동안 미치는 재해로서 환경재해(공해)가 있고 그 밖에 ③앞에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관련재해 ④총포·폭약·가스등 위험물의 관리에서 빚어지는 재해 ⑤중전부터 문제되어 온 화재(여기에는 구조물에서 일어나는 화재외에 산불 등도 포함된다) ⑥의약품·식료품과 각종 전기용품 등 일반국민의 소비에 제공되는 제조물로부터 야기되는 재해 등도 그 발생빈도나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안전관련법령은 이러한 각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책과 아울러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호 및 수습을 위한 대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재해예방시책으로서의 재해유형별로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고 있는데 예컨대 건설관계를 예를 들면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부터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한을 두고(입찰방법의 제한, 하도급 규제 등), 설계·시공 및 감리 등 공사단계에서의 규제에 특히 역점을 두며 준공후 준공검사를 받게 하고 있으며(지속적인 사후관리에 관하여서는 소홀한 면을 보여준다) 제조물의 경우에는 제조자에 대한 각종 시설요건·자격요건을 포함한 인·허가규제와 제조단계에서의 각종 감독 및 검사를 규정하는 외에 유통단계에 대하여서까지 제한을 두고 있다.

그밖에 이러한 재해예방 및 구호를 위한 행정조직 내지 관리체제도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달(예산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수단까지를 포함)과 인력의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안전관련법령현황을 분석하는 기준으로서 재해를 분류함에 있어 그 피해대상자를 중심으로 ①일반공중에 대하여 발생하는 재해 ②사업 및 시설이용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재해 ③제조물소비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재해 ④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재해(산업재해)로 구분하고 그 밖에 ⑤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천재)에 관하여서는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3. 안전관계법령 현황

가. 일반공중에 대하여 발생하는 재해 관련법령

(1) 건축 및 건설관계

(가) 건축법

- 지하 굴착시 안전조치 시행의무 부과
- 방습 등 대지의 안전을 위한 명령 가능
- 건축물의 구조내력·안전 등에 관한 시설기준 법정

(나) 건설기술관리법

- 구조물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 등에게 안전관리노력의무 부과
-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안전관계법령준수의무 부과

(다) 도시재개발법

- 시장·군수의 공익을 위한 개수명령 가능

(라) 주택건설촉진법

- 시장 등의 공동주택 안전진단 실시 가능

(마) 전기공사업법

- 안전시공확보의무 부과

(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종류를 위험도·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로 구분하고,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함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시책임울 지도록 하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시설물의 시공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도록 함
-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유지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1종시설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업무 및 정밀안전진단기술의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를 하는 자는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
-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건설업법·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설계·시공·감리를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2) 소방관계

(가) 소방법

- 안전장소대피훈련 실시의무 부과
-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법정
- 제조소 등에게 안전유지 등 의무 부과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부과
- 위험물시설안전원 배치의무 부과

- 소방본부장 등의 구조대 편성·운영
-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 내무부장관의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실시

(나)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위한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 협회의 안전점검 실시

(3) 에너지이용관계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통상산업부장관의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수립
- 시·도지사의 특정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검사 실시
-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채용의무 부과
-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업수행 등을 위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
- 통상산업부장관의 안전관리교육 실시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 통상산업부장관의 사업자공급시설 검사 및 확인점검 가능
-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안전관리규정 제정의무(신고 필요) 부과
- 안전관리자 채용의무

(다) 전기사업법

- 통상산업부장관의 안전관리기술기준의 제정·고시
- 통상산업부장관의 안전관리 확인점검 실시
-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안전관리규정제정의무 부과(변경명령 가능)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의무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무 법정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실시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 공급자의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의무 부과
-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에게 안전관리규정 제정의무 부과(변경명령 가능)
- 시설·용기 등의 안전유지의무 부과
- 안전관리자의 채용의무 부과
- 가스용품의 품질보장 실시
- 시·도지사의 안전교육 실시
-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정명령
-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설치

(마)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안전관리규정 제정의무 부과(변경명령 가능)
-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의무 부과
- 가스사용시설의 위해예방조치 등 의무 부과
- 안전관리자의 채용의무 부과
- 시·도지사의 안전교육 실시

(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가스공급시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의무 부과
- 고압가스사업자 등에게 안전관리규정 제정의무 부과(변경명령 가능)
- 고압가스사업자 등에게 시설·용기 등의 제조시설기준 적합성 확보의무 부과
- 특정고압가스사업자에게 안전관리자 채용의무 부과
- 허가관청의 정기검사 실시
- 통상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진단 수검의무 부과
- 통상산업부장관의 용기의 품질보장 실시
- 시·도지사의 안전교육 실시
-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안전관리 검사기관 지정

(사) 송유관사업법

- 허가 신청시 안전관리 확보에 필요한 사항 기재의무 부과
- 통상산업부장관의 안전상 사용일시정지 등 조치 가능
- 송유관사업자에게 안전관리규정 제정의무(인가 필요) 부과
- 안전관리자 채용의무 부과
- 통상산업부장관의 안전검사 실시 가능

(아) 원자력법

-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원자력위원회 설치·운영
-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안전조치 시행의무 부과
- 과학기술처장관의 사용정지 등 조치가능
- 핵연료주기사업자에게 안전관리규정 제정의무 부과(승인 필요)
- 과학기술처장관의 사용정지 등 조치가능
-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안전기준준수의무 부과
-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제정의무 부과(승인 필요)
-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교육실시의무 부과
- 사고발생시 안전조치 및 보고의무 부과
- 장애방어조치 및 보고의무 부과
-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한 조건부여 가능

(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설립

(4) 교통관계

(가) 도로교통법

- 안전표지·안전지대·안전거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안전확보를 위한 통행금지 및 제한
- 다수 자동차보유자에게 안전운전관리자 선임의무 부과
- 안전띠 착용의무 부과

-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설립
-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교통순시원 배치

(나) 교통안전법

- 정부의 안전시책 수립·실시
- 차량 등 제조사업자에게 안전성향상 노력의무 부과
- 차량 등 사용자에게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의무 부과
- 차량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 부과

(다) 항로표지법

- 항로표지의 개선·이전 등 조치 가능

(라) 개항질서법

- 항로·항법에 관한 사항 규정
- 위험물 취급시 안전조치의무 부과

(마) 해상교통안전법

- 안전조치 가능

(바) 도로법

- 도로관리청의 교통안전을 위한 공작물설치 등 명령가능

(사) 경범죄처벌법

- 공중통로안전관리소홀시 제재

(5) 기타 위험물 관리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총포·도검 등의 수출·수입·소지허가제
- 화약류사용허가, 화약류폐기신고, 화약류양도·양수허가
- 지방경찰청장 등의 안전관리교육 실시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등에게 안전상 지도·감독의무 부과
- 위해예방규정 제정의무 부과(승인 필요)

- 자체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실시의무 부과
- 전기안전점검 실시
- 허가관청의 출입·검사 및 사용금지 등 조치 가능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시·도지사의 광고물의 안전도검사 실시
- 범위반시 제거 등 조치 가능
- 안전도검사 등을 위한 한국광고사업협회의 설립

(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신고의무 부과

(라)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법정

나. 사업 및 시설이용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재해 관련법령

(1) 교통수단이용관계

(가) 해운법

- 선박안전운항을 위한 사업개선명령가능
- 운항관리자 선임의무 부과
- 안전항해를 위한 사업개선 명령가능

(나) 선박안전법

- 선박안전을 위한 시설 등 확인·항해금지 등 처분가능
- 선박승무원에게 결합신고의무 부과
- 위험물의 운송시 안전유지의무 부과

(다) 유선및도선사업법

- 유선사업자 등에게 안전운항의무 부과
- 유선승객의 준수사항 법정

- 도선사업자 등에게 안전운항의무 부과
- 도선승객의 준수사항 법정
- 유·도선사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수립의무 부과
- 유·도선사업자에게 안전교육실시의무 부과
-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안전점검 및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가능

(라) 항공법

- 비행장치의 안전기준 법정

(마) 항공기운항안전법

- 기장에게 안전을 위한 행위저지권한 부여

(바) 자동차운수사업법

- 안전수송을 위한 사업개선명령 가능

(사) 육운진흥법

- 안전운행 등에 관한 육운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아) 철도법

- 열차운행 일시중지 가능

(자) 도시철도법

- 이용자안전을 위한 조건부과 가능
- 도시철도건설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공작물 신·개축 등 조치 가능
- 안전성확보를 위한 사업개선명령 가능

(차) 삭도·케도법

- 안전운행위반시 면허취소 등 조치가능
- 안전검사 가능

(카) 여객자동차터미널법

- 사업자에게 안전조치의무 부과

(과) 화물유통촉진법

- 이용자안전을 위한 사업개선명령가능

(2) 기타 사업 및 시설이용관계

(가) 의료법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 적합성 확보의무 부과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부과

(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 승강기이용자에게 안전수칙준수의무 부과
- 승강기의 자체검사 및 유지·보수의무 부과

(다) 사격및사격장단속법

- 사격장사용제한 등 조치가능

(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체육시설업자에게 안전기준준수의무 부과
-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가능

(마) 청소년기본법

-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법정 및 시정조치 가능

(바) 도시공원법

- 관리자에게 공원시설 안전성확보를 위한 정기점검조치의무 부과

(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공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가능

다. 제조물소비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재해관련법령

(1)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의 안전권 규정

- 행정청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 가능

(2) 산업표준화법

- 공업진흥청장의 안전에 관한 시험실시 가능

(3) 품질경영촉진법

- 공업진흥청장의 공산품 안전검사 가능

- 안전검사기준 고시

- 안전검사미필 공산품의 판매금지 가능

- 품질경영심의위원회의 설치

- 안전검사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보고징수·검사실시 가능

(4)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 안전을 위한 수출검사대상물품 고시

(5)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안전기준 법정

- 개선명령 가능

(6)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제도

(7) 농업기계화촉진법

-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의 수립

-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가능

라.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재해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부과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부과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신고의무 부과

- 안전상 조치 가능

- 유해작업 도급 금지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유해기계·기구 등 검사
- 안전·보건진단의무 부과
- 안전보건개선계획
- 산업재해예방시설 설치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복지사업 실시

(3) 노사협의회법

-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사항에 포함

(4) 한국산업안전공단법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설립

(5) 광산보안법

- 노동부장관의 광업조업의 안전에 관한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권고 가능

(6) 수산업법

- 어업감독공무원의 안전조업조치 가능

(7) 어선법

- 수산청장의 어선안전조업을 위한 조사·연구시행

(8) 국가공무원법

- 안전기준 설정

(9) 지방공무원법

- 안전기준 설정

(10) 군무원인사법

- 안전기준 설정

(11) 소년원법

- 직업훈련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시행의무 부과

- (12) 경륜·경정법
 - 안전조치 법령

마.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관련법령

- (1) 재해구호법
- (2) 풍수해대책법
 - 예방 및 수습체계가 풍수해대책법에 규정됨
- (3)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의 정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실시 의무
 - 보조 및 지원
 -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등의 설치
 - 응급조치
- (4) 산림법
 - 천재지변으로 인한 양묘사업 피해보상
- (5) 담배사업법
 - 천재지변으로 인한 연초피해에 대한 재해보상금지급
- (6) 인삼사업법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삼피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4. 재해예방에 관한 행정체계

93. 7. 23 국무총리훈령 제280호 「재해의예방·수습에관한훈령」에 의하면 국내의 재해관리시스템은 크게 3원화되어 있다.

동 훈령 제3조에서는 각종 사고로 인한 재해수습의 주무부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자연재해는 건설교통부와 내무부가 화재·교통사

고·붕괴·폭파·방사능사고 등 인위적 재해(인재)는 경찰·소방 등 소관부처 별로 관여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며,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는 군과 민방위가 구난책임을 맡도록 되어 있다.

[표] 각종사고의 재해수습 주무부처 (훈령 제3조제1항)

1. 건축물화재사고 : 내무부
2. 가스·전기사고 및 광산사고 : 통상산업부
3. 건축공사·도로·교량·하천·제방 등 붕괴사고 : 건설교통부
4. 유독물등 수질오염사고 : 환경부
5. 방사능사고 : 과학기술처
6. 항공기사고 : 건설교통부
7. 열차사고 : 건설교통부(철도청)
8. 선박·해난사고 : 건설교통부(해운항만청)
9. 산불사고 : 농림수산부(산림청)
10. 자동차·해양오염사고 : 내무부(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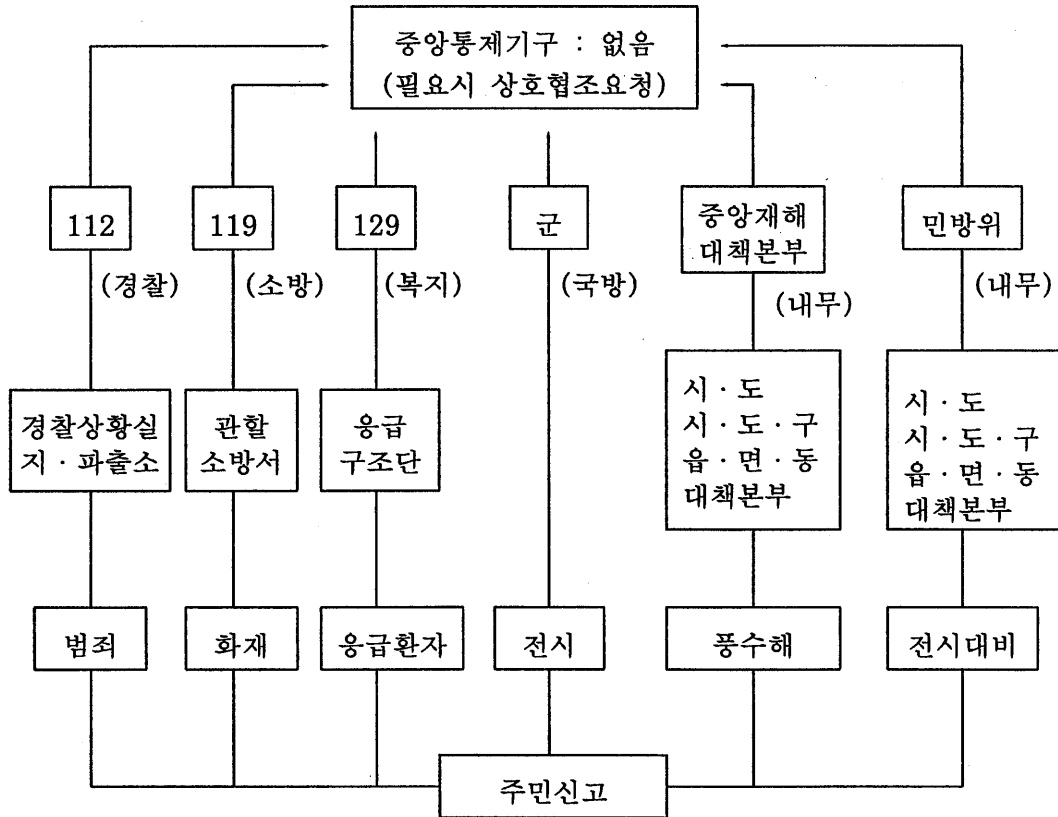
재해에 따른 응급구호기관도 112(범죄), 119(응급환자), 중앙재해대책본부(풍수해), 민방위(전시대비), 군(전시) 등 여러 기관이 재해의 종류에 따라 각자 업무를 맡고 있다.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총괄·지휘기구인 현재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자연재해의 경우 중앙민방위협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산하 재해대책위원회(위원장 : 내무부장관, 위원 : 각부처 차관)에서 방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정도이다.

재해발생시에는 풍수해대책법에 따라 중앙재해대책본부(본부장 : 내무부장관)와 시·도 및 시·군·구의 재해대책본부에서 수습·복구활동을 맡고 있으며, 화재·가스사고·교량 및 건물붕괴 등 인재의 경우도 국무총리실에 중앙사고대책협의회, 주무부처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사고발생지에 지역사고대책본부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훈령 제5조)

이와 같은 국내재해구호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국내재해구조체계



사고예방을 위하여서는 시·도와 시·군·구에 재해예방대책협의회를 설치하여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 및 업무협조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동 협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위원은 유관기관의 장,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협의회는 반기별로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에는 재해유형별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각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총괄은 시·도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며,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그 재해와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장으로, 위원은 관련업계 대표·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①지역단위종합방재계획의 수립 및

심의 ②관계법령에서 정한 관계기관 협의사항 ③취약지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반의 편성·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훈령 제10조 내지 제12조).

이상에서 본 것 처럼 종합적인 재해예방 및 수습을 위한 행정협의체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고, 각 개별법에서 재해유형별로 주무부처장관이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재해예방에 관한 근거법규가 산재되어 있음에도 관련법규 상호간에 유기적 연계성이 없어 예컨대 특정 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에 있어 관계부처간의 상호 협조체계가 갖추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현행안전관련법제의 문제점

1. 총 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의 예방 및 사후수습을 위한 여러가지 법령들이 있으나 이들 법령 상호간에 연계성이 부족하고 다수 부처가 관련된 경우 부처간의 협조체제도 크게 미흡하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구포열차사고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이 작성한 법령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고개요]

93년 3월 28일(일) 오후 5시 25분경 부산 북구 덕천2동 3811소재 경부선 하행선 서울기점 427.1킬로미터 지점에서 서울발(12시 45분)부산행 무궁화 117호열차(기관차 포함 총9량)가 노반 함몰로 전복된 세칭「구포열차전복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78명이 사망하고 165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적피해와 기관차와 발전차, 객차 2량이 대파되고 선로가 총 240미터 굴곡되고 선반폭 30미터, 높이 9미터의 약 2천 4백m³ 붕괴되는 물적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은 이미 열차전복사고는 설계를 위한 지질조사에서부터 발주, 시공감독 감리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통하여 관련자 전원의 총체적 과실로 인한 인재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는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 지중선사업처와 시공자인 삼성종합건설주식회사, 사고구간의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한진건설산업주식회사, 감리용역업체인 동명기술관리공단, 설계를 맡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및 지질회사등과 공사의 허가관청인 부산시 및 그 감독관청인 북구청의 선로안전점검을 담당한 부산지방철도청의 관련공무원 등이 관련되어 있다.

[법령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첫째,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제23조, 제27조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일정규모이상의 공사는 설계시부터 중

양정부(투자기관의 경우 : 1백억원 이상) 또는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다.

발주처인 한국전력은 본건 지하전력구공사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전기공작물중 전선로에 해당하여 전기공사법 제2조제1호, 동법 제2조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본문에 의하여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므로 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법상 감리를 들 의무도 없으나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문관리회사인 동명기술공단으로 하여금 시공감리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명기술공단의 감리사들이 불성실하게 감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한 처벌조항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는 당해 공사가 건설공사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의 건설공사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에서 제외하는 규정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단서의 예외조항규정에 본건과 같은 지하전력구공사 등을 추가해야 한다.

둘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 : 본건과 같은 지하구조물설치의 토목공사는 동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정확한 지질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 지질조사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전문업체가 시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공사의 설계도상의 지질조사는 적어도 본 사고장소 부근에 한하여서는 그 정확성·진실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기술용역육성법은 이에 대하여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개정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는 이를 삭제하여 제재규정이 없다. 따라서 개정법률에 고의 또는 과실로 지질조사 등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와 유사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철도법개정 : 철도청이 부산시로 부터 의견조치를 받고 제시한 철도청원시설규칙은 철도청고시로서 대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철도법 제76조제2항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열차의 안전운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철도경계선으로 부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축 기타 공작물 등의 설치, 증축·증설, 개량을 제한하거나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교통부장관의 사전제한 조치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위 청원시설규칙의 일부내용을 철도법에 삼입, 명문화하여 본건과 같은 공사의 경우 사전에 철도청과 협의하도록 의무 규정화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넷째, 건설업법 개정 : 현행 건설업법 제59조제2호는 부실공사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후 전기간내에(목적물의 구조에 따라 3년 내지 5년) 주요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가 생긴 경우로 한정되어 본건과 같이 공사도중의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동 조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와 같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다섯째, 행정감독권한 책임소재 :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시설권한은 시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포함)·군수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권한을 하부기관에 재위임하는 규정이 없으며 감독권한은 위 시행권한의 일부라 할 것이다. 부산시가 본건 도시계획사업을 허가하면서 그 감독을 복구청에 위임한 것은 법상 근거가 없어 이는 사실상 감독사무를 구청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조치로 밖에 해석할 수 없어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으므로(부산시에서는 1979년 10월 13일 개정된 도시계획업무사무처리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동지침의 근거규정이 애매함) 또 도시계획법상 권한의 위임한계에 대한 명백한 규정의 신설 등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철도법, 건설업법 등의 입법미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 열차사고외에 다른 사고의 경우에도 관계법령상의 미비점 내지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글에서는 안전관계법령 전반에 걸쳐 공통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재해의 예방 및 수습체계 미흡

현행 안전관계법령체계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재해예방 및 수습을 위한 행정체계가 산만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데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해발생에 대비한 사전규제 및 지도·감독에 관한 법규정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으나 재해예방을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을 담당할 기관 내지 절차에 관한 법규정과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사고처리체계에 관한 법규정이 미비되어 재해예방을 위한 종합시책의 강구 내지 사고처리에 있어서의 각종 명령·조치 권한에 관하여는 법체계상 공백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사전규제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 사업의 인·허가제
- 안전기준 법정
- 안전책임자 선임의무 부과
- 안전을 위한 검사 및 개선명령 등
- 안전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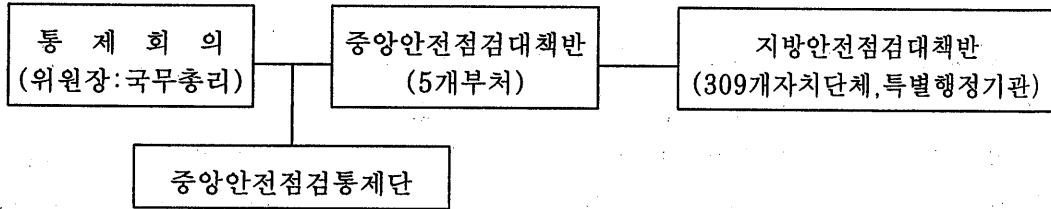
특히 자연재해를 제외한 인위재난에 대한 응급사고처리체계에 관한 법규정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처리시 관계기관간 협조,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행정내부지침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관계기관간 협조체제를 일반 국민들이 사전에 인식하기 어렵고 사고발생시 그 수습을 위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지 못하며 관계기관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재해발생시 신고체계가 112·119 등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사전에 숙지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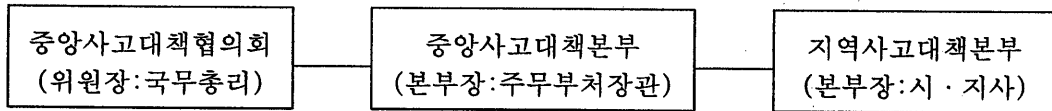
〈현행 사고처리체계〉

- 개별법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수습관리
- 안전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예방

·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를 통한 안전관리관련 주요사항 협의조정



- 응급구조체계
 - 응급구조기관인 경찰(112), 소방(119)
- 사고수습체계
 -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훈령에 의거, 사고의 규모에 따라 수습체계 운영



외국의 사례를 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정부조직인 911전화로 재난신고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는데, 911은 소방서 방계조직의 응급지원센터방식으로 신고된 상황에 따라 소방서나 경찰·병원 군대 등에 알려 공조체제를 갖추거나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방에는 재난관리청이 설치되어 전국적인 재해에 대처하고 재해원인분석·교육훈련 등을 담당하게 하며, 사고수습책임은 기본적으로 각 주 정부에서 맡도록 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전화번호 18번을 누르면 5분내에 소방대원이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경찰·병원·군 등에 추가지원으로 요청하며, 이를 위하여 전국에 분포된 1만여개의 비상센터에 24만명의 소방대원이 상시출동태세를 갖추고, 20개의 비행장에 헬기가 상시대기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119전화로 신고를 받아 대응하고 있는데, 지진 등 대형재해가 많아 지진피해 판독·화재확대예측 등 첨단 컴퓨터 영상시스템 내지 정보전달체계의 첨단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재해배상 및 보상관련규정상의 문제점

재해로 인하여 손실 내지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보상 및 배상에 관한 법규정이 미비되고 위험책임(무과실책임) 원칙 등을 채택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에 관한 피해 국민의 불만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현행 법제에서는 재해로 인한 보상·배상이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되는 관계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위험방지등에 대한 사업주체의 책임이 배상 등의 금액산정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절차〉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하면 신청후 4주 이내에 배상금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다. 배상금지급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결정전치주의) 배상금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결정이 없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배상심의회에는 상급심의회인 본부배상심의회(법무부)와 특별배상심의회(국방부)가 있고, 하급심의회로서 지구배상심의회가 있으며, 배상심의회결정이 있는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서가 송달되면 그 결정에 동의할 경우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학계에서는 동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보아 고등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나 법원에서는 실제 민사소송으로 보고 지방법원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조물 제조자의 책임범위도 현행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과실)책임과 하자담보책임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조물책임자의 책임범위가 축소규정되어 있는 점도 문제이다.

제조물책임자의 『입법화운동』이라고 할 만큼 현재 미국,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 일본 등의 주요 선진공업국은 결합제조물로 인한 피해구제(소비보호)를 위해 입법하였거나 혹은 추진중에 있다. 일찌기 제조물책임에 대한 업

격책임(무과실책임)원리를 판례법으로 확립한 미국은 최근 제조물책임의 개혁 입법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EU에서는 1985년 7월 25일 당시 EC각료이사회가 통일지침을 마련하여 가맹국으로 하여금 법의 통일을 기하도록 의무 지워 가맹국은 국내입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웃 일본도 최근 활발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를 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조류를 그냥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외국의 입법례〉

(1) 미국은 1960년대부터 판례의 전개를 통하여 기존의 과실책임과 보증책임에 의한 해결에서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법상의 엄격 책임 법리가 형성되어 왔다. 이 법리는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 제조자의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피해자는 제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결함제품사고의 피해자 보호에 큰 진전을 이루었고, 연방법원과 각주 법원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채택되었다.

(2) 영국에서는 직접적 계약당사자관계가 엄격하게 요구되는 보증책임과 제조자의 과실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지고 있는 불법행위책임에 의하는 두가지 제조물책임법리가 발전되었으며, 특히 1979년의 동산매매법에 의하여 묵시의 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서 매도인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3) 독일에서는 불법행위책임, 계약책임 그리고 위험책임에 의한 법리가 발전되었는데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한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과실의 입증책임을 제조자에게 전환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특히 위험책임은 귀책원인으로서 과실에 갈음하여 위험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행위 또는 용태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행위 또는 용태를 원인으로 위험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리이다. 특히 특별법분야에서 도입되어 제조물책임분야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4) 프랑스에서는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일본과 달리 제조물책임에 계약책임법리가 지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계약책임중에 하자담보책임에 의하여 제조자에 대해서는 그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다는 무과실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최종 매수인이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거나 유통업자 대신 제조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직접소권이 인

정되고 있다.

(5) 일본에서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두가지 제조물책임법리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현재 다수설이나 판례는 일본 민법 제709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여 제조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대별되고 있으며, 계약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에 의하여 이를 구성하고 불법행위책임은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나누어지며, 판례는 대부분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제조물책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4.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의 통일성 결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되고 있으나 법령간 통일성과 일률성이 결여되어 있어 일률적인 사고예방조치가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재해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상의 조치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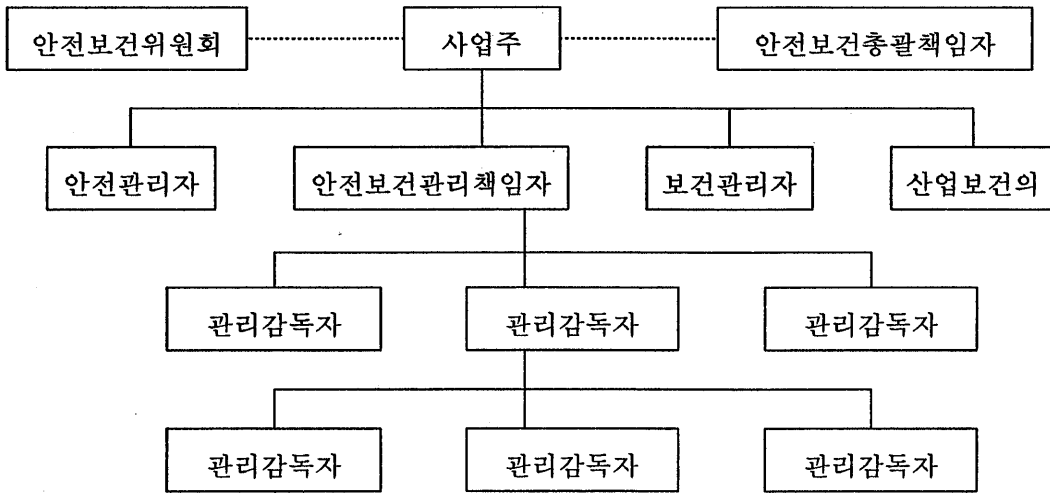
법령명	자체 안전관리 규정제정	안전관리자 채용의무	허가관청의 안전검사	안전교육 실시	개선명령
송유관사업법	○ (인가)	○	○		○ (일시정지)
집단에너지사업법	○ (신고)	○	○		
전기사업법	○ (신고)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 (신고)	○		○	○
도시가스사업법	○ (신고)	○		○	○

법령명	자체 안전관리 규정제정	안전관리자 채용의무	허가관청의 안전검사	안전교육 실시	개선명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신고)	○	○	○	
소방법		○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승인)		○	○	○

각분야별 재해예방에 관한 모범적 입법례는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법은 하위법령으로서 시행령외에 수백조문에 달하는 다수의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체계〉

○사업내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담당자 겸임)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개선
- 산재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산재통계 유지·기록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확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신고

- 내용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무, 안전·보건교육·작업장 안전관리, 작업장 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기타
- 노동부장관의 변경명령
- 신고절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
- 효력 : 취업규칙과 같은 효력

○유해·위험예방조치

- 안전조치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504개조)
- 보건상조치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56개조)
- 작업중지, 중대재해 발생시 원인조사 및 안전보건진단
-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화
 - 기준제정위원회 설치
- 유해작업도급 : 안전·보건평가를 받은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함
- 도로사업에서의 안전·보건조치
 -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지원 등
 - 시공방법·공기 등에 관한 부당한 조건금지
- 도급사업·건설업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
 - 정기 교육 : 매월 2시간(관리감독자는 매월 2시간 추가)
 - 채용 및 작업방법 변경시 : 8시간·건설업에서는 1시간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 16시간(건설업에서는 2시간) 안전 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강사요원 교육이수자가 실시(지정 교육기관에 위탁가능)

-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대상 : 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 재해발생 사업장 등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 안전담당자
 - 교육내용 및 시간 : 시행규칙 별표 10(관리책임자 : 12시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58시간, 산업보건의 : 27시간, 사업주 : 4시간, 관리감독자 : 6시간)
 - 유해 · 위험기계 · 기구 등의 방호조치
 - 대상 및 방호조치내용 : 시행규칙 제46조
 - 성능검사에 합격한 방호장치 사용
 - 타인에게 기계 · 기구 · 설비 및 건축물 대역시 유해 · 위험방지조치 : 시행규칙 § 49 - §57
 - 유해 · 위험기계 · 기구 등의 검사
 - 노동부장관의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제정 및 제조 · 수입규제
 - 제조 · 수입시 설계검사 ·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와 사용시 정기점검 실시
 - 검사 대상 : 시행규칙 §58
 - 보호구 제조 · 수입시 검정
 - 자체검사
 - 자격을 소지한 자체검사원에 의한 정기검사실시, 결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보존
 - 지정검사기관에 위탁실시가능
 - 유해 · 화학물질 제조 · 수입 등 금지 및 제한
 - 금지품목 : 황린성냥, 벤지딘, 벤젠 등(시행령 §29)
 - 허가품목 : 디클로벤지딘, 석면 등(시행령 §30)
 - 유해물질표시 : 명칭 · 성분 및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주의사항 및 긴급방재요령 등
 -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
- 근로자의 보건관리
- 작업환경의 측정 등
 - 대상작업장 : 시행규칙 §93
 - 자격소지자가 측정 · 평가후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요구가 있을

때 근로자대표 입회)

- 지정측정기관에 위탁실시가능
- 건강진단
 - 종류 : 채용시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사무직 2년 1회, 기타 1년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연·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의 경우에는 채용시, 배치전환시 및 6월에 1회 이상 실시
 - 건강진단결과는 근로자에게 통보,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변경·작업전환·근로시간단축·작업환경측정 등 조치의무
- 건강관리수첩발급
-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제한(1일 6시간, 주 34시간) 및 연장금지
-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감독과 명령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안전·보건진단명령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
- 근로감독관 및 공단직원에게 권한 부여

이와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체계는 사업장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서 노사문제의 중점이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로부터 산업재해예방으로 옮겨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상당히 완벽을 기한 제도로 볼 수 있는 바, 일반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규정한 다른 법령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내용을 모델로 하여 대폭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재해유발행위에 대한 제재의 미흡

재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직접 관계되는 중대한 위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 및 재해예방 관계법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재해발생 사업주체에 대한 제재수단간에 일률성이 결여되어 있고 강력한 제재수단의 도입의 미흡으로 사업주체의 재해대비노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안전관계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예〉

법령명	징역				벌금				
	5-10 년 이하	3년 이하	2년 이하	1년 이하	1000- 3000 만원 이하	500 만원 이하	300 만원 이하	200 만원 이하	100 만원 이하
체육시설의설치및 이용에관한법률				○			○		
품질경영촉진법			○		○				
총포·도검·화약 류단속법	○					○			
소방법									○
유선및도선사업법				○		○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	
송유관사업법		○		○	○				
집단에너지사업법	○			○		○	○		
산업안전보건법						○			
선원법						○			

또한 재해예방조치를 부실하게 하는 사업주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재해예방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비용과 노력이 낭비로 여겨질 수 있고, 심지어는 예방보다 사후수습에 드는 비용이 더 적다는 것을 악용하여 예방자체를 소홀히 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재해예방에 소홀히 한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인·허가시 안전관계기준의 비현실성

안전관계사업의 인·허가시 안전관계기준에 관한 사항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점이 많아 시설·자격기준의 타당성·실효성이 저하되어 있다.

먼저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시설·자격기준의 설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시설·자격기준이 많아 안전관계법령의 실효성 저하의 요인이 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안전관계담당책임자 등의 선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이 다수 있으나 전문인력양성 및 자격부여에 관한 제도미비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며 자격자의 실제 공급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자격자의 의무고용을 강제할 경우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문제점도 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이유로 하여 각 개별법에 규정된 재해예방 관련조항을 대폭 완화시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해예방에 실효성이 없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칫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까지를 완화시켰다면 이는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상 안전관리자채용의무 완화대상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에관한법률
- 도시가스사업법
- 소방법

- 전기사업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도로교통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IV. 안전관계법령의 개선방안

1.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및 행정조직 정비

현행 안전관계법령은 자연재해 발생시 이에 대한 응급처리조치 등에 대하여는 현행 풍수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서 자세하게 규정되고 있으나 인위재난에 대한 응급처리조치는 소관부처별로 자체 훈령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정부 전체적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대응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는 바 입법론적으로는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을 포괄하는 가칭『국가재난관리법』을 기본법형식으로 제정하여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응급조치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제구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현재 내무부에서는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을 구분하여 법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행체계를 유지하면서 인위재난에 대한 대책을 규정한 가칭「인위재난관리법」을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의하면 현재 재해유형별로 여러부처에서 분장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되, 특히 각종 응급구조구난업무를 총괄할 「응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하되, 응급구조구난본부는 내무부장관을 본부장으로, 관계부처 차관을 부분부장으로 하고, 내무부 소방국이 주관하여 응급구조담당관과 함께 상황실을 설치하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도 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응급구조구난본부는 응급구조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민방위대를 직접 지휘하고,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대형사고의 현장수습을 담당하며, 대형사고시 국방부·적십자사, 의료기관·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 인력 및 장비지원을 요청하되, 중국적인 사고수습 및 복구는 소관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응급구조구난체계를 소방분야에 맡기려는 것은 훈련된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전국적인 조직인데도 기동성이 뛰어나고 각종 사고 및 재난발생의 출동단계에서는 인력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천재와 인재를 구분하여 관리할 이유가 없고 그 효과도 반감되며, 소방조직을 근간으로 할 경우 군·경찰조직 등을 효과적으로 지휘·통솔하기 어렵고, 소방조직과 경찰조직의 신호체계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통일되지 못하여 신속성과 즉시성이 뒤떨어진다는 점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인력과 장비의 확충도 시급한 문제인 바, 구조용 헬기 등 장비와 군특수병과 출신·전문산악인 등 정예 구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 여러 기관에 분산배치되어 있어 제대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밖에 다양한 구조·구급서비스의 발굴과 광역 구조·구급활동에 대비한 종합무선통신망의 확충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적·물적장비를 갖추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 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재해예방·수습기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내무부 민방위본부를 「재해관리본부」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내무부 소속기관으로서 다른 부처를 지휘·통솔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 조정·총괄기능을 갖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재난관리처 또는 안전관리처를 신설하고 여기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기획·조정업무와 재해의 예방 및 사고 수습을 위한 집행업무 까지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시설물 등 설치·관리의 체계화

현재 주요 건축물·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서는 건축법·소방법 등에서 설계·시공·감리 등에 관한 절차와 상세한 시설기준을 두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안전성보장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하였고, 전기공사업법·가스사업관계법 등에서 분야별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외에 건설업법 등에서도 입찰 및 하도급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정부발주공사의 경우에는 95년 7월 시행 예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상호간에 체계성이 결여되고 부처간의 이해관계로 예외

규정을 두는 사례가 많은 등(구포철도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목공사가 주종을 이루는 지중선 매설을 전기공사로 분류하고, 이는 전기분야의 전문적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설계·시공 및 감리상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비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사고예방을 위하여서는 지속적인 보수·관리가 필수적임에도 종전에는 여기에 관하여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성수대교붕괴 등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야기시켰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주요시설물은 60년대 이후 양적 성장시대에 건설된 것을 감안한다면 건설당시부터의 부실요인과 노후화 등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할 것이다.

성수대교붕괴사고후인 94년말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에서도 당장에 드러난 문제점만을 반영하였을 뿐이고, 예를 들어 주요시설물의 강제보험가입, 유지·보수비의 계상 및 적립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아쉬움을 주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철저한 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실효를 거둘 수 있고 유지·보수비를 사전에 적립시킴으로써 재원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법의 보완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재해보상·배상체계의 보완

재해발생시 보상·배상에 있어서의 위험(무과실)책임원칙을 도입하고 보험의무가입제도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재해발생시 손해배상법리에 있어서 과실책임원칙에만 치중되고 있어 평소 안전유지의무 준수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강화를 위하여 위험(무과실)책임원칙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의 과중한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책임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조물책임자의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추진동향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외국 동향을 참고하여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법추진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미국은 1970년대이후 제조물책임소송의 증가와 손해배상액의 고액화에 의해 제조물책임위기와 배상책임보험의 위기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미국의 독특한 사법제도인 배심제도와 징벌적 배상제도 및 소송선호의 국민의식에도 그 이유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비자피해구제와 기업의 보호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연방과 주차원에서 법 적용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을 비롯한 연방법으로서 카스텐법안 등의 여러 법률안이 의회에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주차원에서도 별도로 불법행위법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 EU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에서는 EU지역내에서의 경쟁조건의 통일화, 유통의 촉진 및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1985년 7월 25일 EC지침이 채택되었다. 이 지침의 특징은 제조물책임원칙으로 무과실책임을 도입하고, 각 가맹국들에게 3년 이내에 국내입법을 통해 EC지침을 반영하도록 의무를 지웠다. 지침성립을 둘러싸고 제1차 농수산물을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손해의 범위 및 배상책임 최고한도액을 설정할 것인지의 여부 등이 가맹국간에 큰 쟁점으로 대두되었으나, 국내입법시에 반영여부를 각 가맹국에 맡김으로써 통일지침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지침의 성립후 가맹국은 국내입법을 서두르고 있으며, 1993년 2월 현재 가맹 12개국 가운데 10개국이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다. 입법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제1차 농수산물의 적용을 제외하고 개발위험의 항변은 인정하며 배상책임의 최고한도액은 설정하지 않는 것을 공통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일본의 경우 1972년부터 제조물책임의 입법화를 위한 기초적 연구가 시작되어 1980년대 후반부터 구체적인 조문형식의 입법시안이 학계, 변호사단체, 정당 등에서 제안되고 있다. 각 입법시안의 내용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특징은 제조물의 범위에 제1차 농산물·수렵물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책임주체 가운데 판매업자·임대업자에 대하여도 제조자에 준하는 책임을 지우는 점,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추정규정을 두고 있는 점, 개발위험의 항변을 제조자에게 인정하지 않는 점 및 책임기한을 보통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입법논의에 힘입어 정부차원에서도 1990년 들어 적극적으로 『제조물책임제도 등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1994년 4월 정부안을 확정하여 동년 6월 중의원을 통과하였

다. 동법안의 내용은 6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임원칙으로서 무과실책임의 도입, 결합 등의 개념정의, 면책사유로서 개발위험의 항변의 인정, 책임제한기간의 설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들어 학계에서 간헐적으로 입법시안이 제시되었고 국회차원에서도 1982년 2월에 제조물책임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었으나 사회경제적인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유보되었다. 이러한 입법시안들은 EC지침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다만 시안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이행 확보조치와 소송절차상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한편 국제무역의 증대로 제조물책임에 대한 섭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제조물책임법의 확립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지정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1973년 10월 『제조물책임의 준거법에 관한 조약』이 성립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은 대체로 불법행위의 경우를 유추하여 사고발생지를 가장 밀접한 관할원인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제조물의 유통과정이나 제조물의 성질, 유동성, 사용에 있어서의 이동성 등 경제적인 통상성을 고려하여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안전관계법령상 제반조치 등에 대한 통일적인 체계마련

우리나라에서는 안전관계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개별법에서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들이 개별적·산발적으로 규정되고 있어 안전조치 등에 관한 체계적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조치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개별법상 규정되고 있는 각종 안전상 조치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공통되는 내용들을 통칙적 규정으로 하여 준거하게 되면 안전조치상 통일성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법령상 제반조치들의 현실부합성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및 면담 등의 조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법령상 일반적인 안전조치의 예로서는 자체안전관리규정의 제정, 안전관리자 채용의무부과, 허가관청의 안전검사, 안전교육실시, 개선명령 등이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예를 참고로 하여 대폭 보완·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5. 재해발생시 제재수단의 강화 및 정비

안전사고예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위한 철저한 예방감독은 물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업주체에 대한 제재수단도 보다 철저할 필요가 있다.

안전관계규정위반자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타당한 방향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제재수단외에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다양한 실효성 확보수단이 보완적으로 작동되어야 안전관계법령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안전유지의무를 게을리한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행 법체계상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제재수단 및 실효성 확보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6. 안전관계기준의 현실타당성 및 실효성 확보

기존 안전관계법령상의 안전관계기준에 관하여 현지조사·면담 등을 실시하여 비현실적인 시설·자격기준을 정한 법령을 추출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안전관계법령을 제정할 때에도 안전관계기준 등에 대한 철저한 현실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비현실적인 안전관계기준은 대형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결 론

각종 재해로부터의 위험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이며, 선진국의 척도는 어느 나라가 보다 완벽한 재해예방 및 구호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재해는 지난날 우리가 안전관리에 소홀히 했던 까닭에 치러야 할 댓가라고 할 수 있지만,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앞으로 이런 재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의 보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안전관계법령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현행 법체계상 미비점은 없는지 여부를 연구·조사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현행 법령중에서 안전관계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 법령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법령은 어떻게 체계화해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행 법령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 안전관계법령은 재해의 신속한 처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일반법·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가장 취약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재해(인위재난)발생시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일반법의 제정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각 개별법에서도 정비·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많으며 무엇보다도 법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서는 소요되는 비용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러한 비용중 일부는 국가의 예산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또한 시설물의 건설·관리주체도 그 일부를 분담하여야 할 것이며 보험제도·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일반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평소부터 재해를 유발시키는 행위(예컨대 과적차량운행 등)를 자제하고 재해를 입었을 때 취할 조치를 숙지하여야 할 것이며, 전문인력의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부록]

안전관계법령의 현황

가. 일반공중에 대하여 발생하는 재해 관련법령

(1) 건축 및 건설관계

(가) 건축법

- 지하 굴착시 안전조치 시행의무 부과

제6조(다른 법령의 배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및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인접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는 때에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건축물의 건축과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방습 등 대지의 안전을 위한 명령 가능

제30조(대지의 안전 등) ①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지에는 빗물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하수구·저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구조내력·안전 등에 관한 시설기준 법정

제38조(구조내력 등) ①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 구조물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23조(건설공사설계 등의 심의) ①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 그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일정규모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 등에게 안전관리노력의무 부과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업자 등"이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 등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허가를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건설부장관에게 그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부투자기관의 장이 직접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종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안전관계법령준수의무 부과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①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업무정지기간중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관리를 한 때.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관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관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 등을 대여한 때
6. 2년이상 책임관리의 실적이 없을 때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책임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책임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삭제>

④건설부장관은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감리전문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감리업무를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도시재개발법

- 시장·군수의 공익을 위한 개수명령 가능

제35조(공익을 위한 개수명령) ①시장 또는 군수는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철거의 필요는 없으나 공공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위하여 개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자비로써 개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라) 주택건설촉진법

- 시장 등의 공동주택 안전진단 실시 가능

제38조(공동주택의 관리) ① ~ ⑮ (생략)

⑯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⑰시장 등은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실시기관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전기공사업법

- 안전시공확보의무 부과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절한 시공을 하게 함으로써 위해를 방지하고,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대상의 되는 시설물의 종류를 위험도·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로 구분하고,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제 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라 함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라 함은 1종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의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이를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이를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5. "공공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 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민간관리주체라 함은 공공관리주체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7. ~ 11. (생략)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시책임을 지도록 하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하도록 함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일상점검 ·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안전점검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외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등) ①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한다.

②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①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

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최장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내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물의 시공자가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에게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⑤유지관리업자는 그가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수가 완료된 때에는 보수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리주체로부터 이행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제14조(사용제한 등)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시설물의 시공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도록 함

제15조(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 ①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부터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유지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제18조(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①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략)

제19조(유지관리업의 등록 등) ①시설물의 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건설업법·전기통신공사법·전기공사법 및 소방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당해 법률에 의하여 시설물의 개량·보수 및 보강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그가 시공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 1종시설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업무 및 정밀 안전진단기술의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도록 함

제25조(시설안전기술공단의 설립) ①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제33조(시설물유지관리예산의 확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를 하는 자는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

제35조(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 ①(생략)
 ②시설물을 설계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건설업법·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설계·시공·감리를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제42조(부실공사 등에 대한 벌칙특례)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건설업법·건설기술관리법·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자·시공자 또는 감리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소방관계

(가) 소방법

- 안전장소대피훈련 실시의무 부과

제8조의2(특수장소의 소방훈련)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 또는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화·통보·피난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특수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한다.

-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법정

제17조(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등) ①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기준(이하 이 장에서 "시설기준"이라 한다)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완공검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때에는 그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조소 등에게 안전유지 등 의무 부과

제17조의2(제조소 등의 안전유지 등) ①제조소 등의 설치자는 당해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의 설치자는 그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조소 등의 설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구분 및 점검자의 자격·점검장비·점검방법·점검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부과

제20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제조소 등(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의 설치자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된 제조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난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제조소 등(호텔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된 것외의 제조소 등으로서 지정수량 10배(목욕장의 경우에는 40배)미만의 것(위험물 제조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위험물안전관리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참여하에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④위험물안전관리자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안전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그 자격구분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⑤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험물시설안전원 배치의무 부과

제21조(위험물시설안전원)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그 제조소 등의 구조·설비에 관한 안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은 내부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본부장 등의 구조대 편성·운영

제94조(구조대의 편성·운영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업무 수행시 필요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제97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①소방기술과 안전관리 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품위보전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98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업무를 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3.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의 회원의 품위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항

- 내무부장관의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제105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내무부장관은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 또는 소방관계인의 교양함양을 위하여 방화관리자·위험물 안전관리자·위험물시설안전원·소방설비기사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선임·채용 또는 고용한 사람에 대하여 그 해임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위한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에 따른 요율 할인등급의 사정
3. 화재예방과 소화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 및 계몽
4.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의 화재예방에 관한 건의
5. 기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 협회의 안전점검 실시

제16조(안전점검) ①협회는 보험계약체결시 또는 보험계약갱신시마다 당해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가입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에

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④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불응한 때에는 협회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⑤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이를 받을 수 없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에너지이용관계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통상산업부장관의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에너지의 대체계획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상공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상공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시·도지사의 특정열사용기자재에 대한 검사 실시

제48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특정열사용기자재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를 설치·증설·개조 또는 개체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한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설치·증설·개조·개체 또는 설치장소의 변경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⑤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중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⑦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채용의무 부과

제49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채용) ①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이하 "검사대상기기조종자"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 및 채용기준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채용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채용기한의 연기를 승인하는 경우에 당해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채용전일까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업수행 등을 위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

제6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추진
2. 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3. 기금의 관리·운용
4. 에너지관리진단 및 지도
5.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6.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계몽 및 홍보
7.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 및 양도
8. 집단에너지사업
9.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상공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 통상산업부장관의 안전관리교육 실시

제81조(교육)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 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리자·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기관·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 통상산업부장관의 사업자공급시설 검사 및 확인점검 가능

제23조(검사 등) ①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공정별로 상공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안전상 지장이 없고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상공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사업자에게 지체없이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확인점검)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공급시설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시설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사용시설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시설의 설치장소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검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안전관리규정 제정의무(신고필요) 부과

제27조(안전관리규정) ①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개시전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공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 채용의무

제28조(안전관리자) ①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채용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②사업자는 안전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내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없을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 및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안전관리자의 자격·인원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전기사업법

- 통상산업부장관의 안전관리기술기준의 제정·고시

제39조(기술기준) 상공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

(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통상산업부장관의 안전관리 확인점검 실시

제41조(확인점검)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의 영업소·사업소 기타 사업장에 출입하여 전기설비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및 보일러 등의 용접을 하는 자의 공장·영업소·사업소 기타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전기설비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출입하여 일반용전기설비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8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점검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안전관리규정제정의무 부과(변경명령 가능)

제44조(전기안전관리규정) ①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의무

제45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사업장 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를 대표자로 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를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⑦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⑧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무 법정

제46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의무) ①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한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제47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 ①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할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한 자는 그를 해임하여야 한다.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제48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전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공급자의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의무 부과

제9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수요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에게 안전관리규정 제정의무 부과(변경명령 가능)

제10조(안전관리규정) ①사업자 등과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 신고자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그 시설 및 용기·가스용품등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개시신고 또는 사용신고를 할 때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전관리규정이 안전확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가스용품의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 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시설·용기 등의 안전유지의무 부과

제12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①사업자 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을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적합한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거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대장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대장을 작성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를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의 채용의무 부과

제14조(안전관리자) ①사업자 등과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채용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와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안전관리자의 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스용품의 품질보장 실시

제22조(가스용품의 품질보장 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업진흥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자로 하여금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표시하여 당해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불량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수집방법 및 불량품의 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가스용품에 그 가스용품의 제조자·용도·사용방법·보증기간 등을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변경시켜서는 아니되며, 가스용품사용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의 안전교육 실시

제31조(안전교육) ①사업자 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 그가 채용하고 있는 안전교육대상자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정명령

제34조(조정명령)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및 안전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

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설치

제38조(기금의 설치) ①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가스안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내에서 정제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수출에 의한 판매를 제외한다)시에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2. 액화석유가스의 수입시에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3. 석유정제업자의 자가 제조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시에 당해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징수비율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가 수입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수입금에 납부 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마)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안전관리규정제정의무 부과(변경명령 가능)

제26조(안전관리규정)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개시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도시가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의무 부과

제27조(가스공급시설의 유지 등) ①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가스공급시설이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의 수리·개선·이전을 명하거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긴급·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가스공급시설의 이전·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가스공급시설안에 있는 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천재·지변·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 가스사용시설의 위해예방조치 등 의무 부과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위해예방조치 등)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사용자에게 다음의 위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주지 및 계도
2.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실시
3.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권고 및 응급조치
4. 기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조치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스사용시설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당해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가스사용자에 대한 가스의 공급을 중지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가스사용자에게 그 가스사용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점검장비·점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관리자의 채용의무 부과

제29조(안전관리자) ①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채용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채용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안전관리자의 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도지사의 안전교육 실시

제30조(안전교육) ①도시가스사업자·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가 채용하고 있는 안전교육대상자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가스공급시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의무 부과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①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②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고압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요자에 대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압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고압가스사업자 등에게 안전관리규정 제정의무 부과(변경명령 가능)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사업자 등과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자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 등의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개시 신고 또는 사용신고를 할 때에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전관리규정이 안전확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용기등의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 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시설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고압가스사업자 등에게 시설·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적합성확보의무 부과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①사업자 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 등의 제조시설을 제4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적합한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고압가스충전대장 또는 고압가스판매대장을 작성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특정고압가스사업자에게 안전관리자 채용의무 부과

제15조(안전관리자) ①사업자 등과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채용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와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안전관리자의 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허가관청의 정기검사 실시

제16조의2(정기검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를 제외한다)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 받은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기준·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통상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진단 수검의무 부과

제16조의3(안전진단)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진단기준·진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통상산업부장관의 용기의 품질보장 실시

제18조(용기의 품질보장 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업진흥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용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당해 용기의 제조자로 하여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중인 용기를 수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불량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용기의

제조사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수집방법 및 불량품의 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시·도지사의 안전교육 실시

제23조(안전교육) ①사업자 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그가 채용하고 있는 안전교육대상자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안전관리 검사기관 지정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①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검사기관은 검사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검사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송유관사업법

- 허가 신청시 안전관리 확보에 필요한 사항 기재의무 부과

제5조(송유관사업의 허가) ①송유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2. 송유관 및 그 부속설비로서 송유관사업용으로 제공되는 것(이하 "사업용시설"이라 한다)중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 가. 송유용 배관의 설치장소·길이·지름 및 배관안의 압력
 - 나. 송유용 탱크의 설치장소 및 용량
 - 다. 송유용 가압펌프의 설치장소 및 가압능력별 수량
 3. 사업용시설에 의하여 수송하는 석유의 종류 및 사업용시설의 석유수송능력
 4. 사업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5. 기타 송유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④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통상산업부장관의 안전상 사용일시정지 등 조치 가능

- 제22조(사업용시설의 유지 등) ①송유관사업자는 사업용시설을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당해 사업용시설이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유관사업자에게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용시설을 수리·개선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그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 ③상공자원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유관사업자에게 사업용시설의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송유관사업자에게 안전관리규정 제정의무(인가 필요) 부과

- 제23조(안전관리규정) ①송유관사업자는 사업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개시전에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사업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송유관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송유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변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관리자 채용의무 부과

제24조(안전관리자) ①송유관사업자는 사업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송유관사업자는 14일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상공자원부장관은 안전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송유관사업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당해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업용시설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통상산업부장관의 안전검사 실시 가능

제25조(안전검사) 송유관사업자는 사업용시설에 대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자원부장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원자력법

-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원자력위원회 설치·운영

제3조(원자력위원회) 원자력이용 및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원자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안전조치 시행의무 부과

제29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①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보전
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전
3. 사업소안에서의 방사성물질 등의 취급·운반·저장 및 폐기
4.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부터의 환경보전

②발전용 원자로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21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처장관의 사용정지 등 조치가능

제30조(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과학기술처장관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발전용 원자로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 대하여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개조·수리·이전·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운영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 기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핵연료주기사업자에게 안전관리규정 제정의무 부과(승인 필요)

제49조(안전관리규정) ①핵연료주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개시전에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이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방사선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핵연료주기사업자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핵연료주기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처장관의 사용정지 등 조치가능

제54조(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과학기술처장관은 핵연료주기시설의 보전등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핵연료주기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사용정지·개조·수리·이전이나 운전방법의 지정 기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안전기준준수의무 부과

제62조(기준준수의무 등) ①핵연료물질사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사업소안에서의 사용·분배·저장·운반 및 폐기
2.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사용시설 등

②과학기술처장관은 당해 사업소안에서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사용·분배·저장·운반 또는 폐기가 제1항의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수리·개선·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 취급방법의 변경 기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제정의무 부과(승인 필요)

제70조(안전관리규정) ①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이나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업의 개시전에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방사선에 관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자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자 등 및 그 종업원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교육실시의무 부과

제88조(피폭관리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에 관계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방사선피폭여부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고발생시 안전조치 및 보고의무 부과

제89조(사고의 조치 등)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 또는 포장중 방사성 물질 등의 누설·화재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이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장애방어조치 및 보고의무 부과

제98조(장애방어조치 및 보고)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진·화재 기타의 재해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시설이나 방사성물질 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2. 원자력관계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
3.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때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관계시설의 사용정지·방사성물질 등의 이전·오염의 제거 기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한 조건부여 가능

제104조(허가 또는 지정조건)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에는 안전성확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의 조건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한 의무를 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설립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교통관계

(가) 도로교통법

- 안전표지·안전지대·안전거리 등에 관한 사항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안전한 지대임을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방향 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12.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표지를 말한다.

13. ~ 21. (생략)

- 안전확보를 위한 통행금지 및 제한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우선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

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 그밖의 사정으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안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한 때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다수 자동차보유자에게 안전운전관리자 선임의무 부과

제45조(안전운전관리자) ①자동차(사업용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46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의 사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댓수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의 안전운전에 관한 업무(자동차정비업무를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운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운전관리자가 해임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의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운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안전운전관리자가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대하여 그 안전운전관리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④자동차의 사용자는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안전운전관리자를 해임하고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안전운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띠 착용의무 부과

제62조(운전자 및 승차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자와 그 승차자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설립

제83조(도로교통안전협회의 설립) ①교통안전계몽 및 교육과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개발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협과 장애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교통안전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3. 교통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4.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운전관리자교육
5.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연구와 개발
6.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교통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건의
8. 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관계단체와의 국제협력
9. 교통안전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2. 그밖의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교통순시원 배치

제102조(교통순시원) ①시·도지사는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확보와 정차 또는 주차의 규제, 그밖의 도로에서의 교통상의 위협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교통순시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교통순시원은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그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교통순시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교통순시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하거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교통순시원의 배치에 따르는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⑦교통순시원의 임용·자격·감독·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교통안전법

- 정부의 안전시책 수립·실시

제3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상교통, 해상교통과 항공교통의 안전(이하 "교통안전"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차량 등 제조사업자에게 안전성향상 노력의무 부과

제6조(차량 등의 제조사업자의 의무) 차량 등의 제조사업자는 그 제조하는 차량 등의 구조·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차량 등 사용자에게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의무 부과

제7조(차량 등의 사용자의 의무) ①차량 등의 사용자는 그 사용하는 차량등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할 차량 등의 사용자의 범위와

교통안전관리자의 정수·직무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차량 등의 사용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차량 등의 사용자는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의 요청 등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차량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의무 부과

제8조(차량의 운전자 등의 의무) ①차량을 운전하는 자(이하 "차량의 운전자"라 한다)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차량이 안전운행상 지장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선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박의 출항전의 검사를 행하고 기상조건, 해상조건, 항로표지 및 사고의 통보 등을 확인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

③항공기승무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항공기의 운항개시전의 확인, 항공보안시설의 기능장애의 보고 등을 행하고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

(다) 항로표지법

- 항로표지의 개선·이전 등 조치 가능

제4조(허가에 의하여 설치한 항로표지의 관리)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 설치한 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항상 그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항로표지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에 귀한 사유 또는 보통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능에 장애가 생기거나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당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장애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조(개선, 이전, 철거 등의 명령과 직접 관리, 수용의 조치) ①제4조제2항에 규정한 경우외에 해상교통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해운항만청장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항로표지의 개선, 이전,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해운항만청장은 해상교통의 안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외의 자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라) 개항질서법

- 항로·항법에 관한 사항 규정

제11조(항로 등) ①개항의 항계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잠종선외의 선박은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해운항만청장은 개항의 항계안에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항계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13조(항법) ①항로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②선박은 항로안에서 나란히 항행하지 못한다.

③선박이 항로안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④선박은 항로안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모든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 적재선박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홀수제약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지방해운항만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외에 별도의 항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은 이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 위험물 취급시 안전조치의무 부과

제23조(위험물 취급시의 안전조치 등) ①개항의 항계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는 소화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인원·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마) 해상교통안전법

- 안전조치 가능

제9조(해난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해난이 발생하여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운항만청장(어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경우에는 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긴급구조를 요하는 해난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경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바) 도로법

- 도로관리청의 교통안전을 위한 공작물설치 등 명령가능

제3조(도로부속물의 정의) ①이 법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 함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기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원표, 이정표, 수선담당구역표, 도로경계표와 도로표지
2.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 등으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3. 도로에 연결하는 자동차주차장 및 도로수선용재료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3의2. 도로에 관한 정보제공장치·기상관측장치 또는 긴급연락시설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사) 경범죄처벌법

- 공중통로안전관리소홀시 제재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 34. (생략)

35.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의 위험한 사고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불을 켜놓지 아니하거나 그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사람

36. ~ 54. (생략)

(5) 기타 위험물 관리

(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총포·도검 등의 수출·수입·소지허가제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①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용으로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화약류를 수입한 사람은 지체없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거나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밖의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의 동거친족(배우자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중에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총포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에 대하여는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화약류사용허가, 화약류폐기신고, 화약류양도·양수허가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①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이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화약류사용의 목적·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화약류의 폐기) ①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기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경찰서장은 화약류폐기의 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 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화약류폐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양도·양수의 제한) ①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2.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3.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4.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5.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이 그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②경찰서장은 화약류의 양도·양수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화약류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외의 사람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허가를 받은 사람외의 사람으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를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들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를 양수하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 지방경찰청장 등의 안전관리교육 실시

제22조(교육실시) ①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분사기·전자총격기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총포·분사기·전자총격기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에 관한 법령
2. 엽총·공기총·분사기·전자총격기의 사용·보관 및 취급에 관한 실기
3.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

②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중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그밖의 내부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등의 안전상 지도·감독의무 부과

제31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①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작업에 관한 사항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를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 위해예방규정 제정의무 부과(승인 필요)

제38조(위해예방규정) ①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의 제조업자는 내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재해의 예방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재해의 예방 및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의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해예방규정을 지켜야 한다.

- 자체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실시의무 부과

제39조(자체안전교육) ①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제조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계획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제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안전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자체안전점검) ①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계획을 세워 그 점검을 실시하되, 허가관청에 그 안전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계획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이상의 정기점검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점검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정기안전검사 실시

제41조(정기안전검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허가관청의 출입·검사 및 사용금지 등 조치 가능

제44조(출입·검사 등) ①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의 제조소·판매소나 화약류저장소 또는 화약류사용장소 그밖의 필요한 장소를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이나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①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사용·양도·양수허가의 취소 또는 화약류 운반의 제한
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의 제조업자·판매업자나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이전·보완 그밖의 시정조치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 그밖의 취급자에 대한 제조·판매·수수·수출입·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의 일시금지 또한 제한
4. 화약류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화약류보관장소의 변경 또는 폐기의 명령, 화약

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

5.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의 제조업자·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그 시설의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②허가관청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를 임시 영치할 수 있다.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제48조(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①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로 인한 위험과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조사·연구
2.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
3.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의 제조·운반·사용·저장 등의 기술 및 시설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4.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5.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의 안전 및 기술 교육
6.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안전에 관한 자료 수집과 기술서적 등의 간행 및 반포
7.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
8.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자문
9. 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안전에 관한 업무
10. 그밖의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시·도지사의 광고물의 안전도검사 실시

제9조(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의 업무를 옥외광고사업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자격 기타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범위반시 제거 등 조치 가능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시·도지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또는 그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에게 계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절차에 관한 행정대집행법 제6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예"를 "지방세채납처분의 예"로 본다.

- 안전도검사 등을 위한 한국광고사업협회의 설립

제11조의2(한국광고사업협회의 설립 등) ①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한국광고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④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
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자

⑤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위원의 수·임기·선임방법,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신고의무 부과

제6조(제조·수입의 신고)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성상 및 안정성 등 당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유해성심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법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과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6.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소각·파쇄·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특정폐기물처리시설” 이하 함은 소각·파쇄·중화·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사업 및 시설이용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재해관련법령

(1) 교통수단이용관계

(가) 해운법

- 선박안전운항을 위한 사업개선명령가능

제16조(사업개선의 명령) ①해운항만청장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요금 또는 운송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 또는 변경
4. 보험에의 가입
5. 선원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6.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의 여객선의 공동운항·설비의 공용 또는 공동계산
7.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제6호의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운산업육성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진흥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운항관리자 선임의무 부과

제24조(운항관리자) ①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자의 자격요건, 임면방법·절차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운항관리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의 준수, 항만에의 여객선 입·출항, 선원의 교육 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 ④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여객선의 출항정지 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⑤여객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관리자를 돕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안전항해를 위한 사업개선 명령가능

제30조(사업개선의 명령) ①해운항만청장은 국제경쟁력의 강화, 항로질서의 유지 또는 화물의 원활한 수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 또는 운송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 또는 변경
 4. 선원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5. 다른 화물운송사업자와의 선박의 공동운항 및 설비의 공용 또는 공동계산
 6.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해운항만청장은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정부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선박안전법

- 선박안전을 위한 시설 등 확인·항해금지 등 처분가능

제12조(확인·신고 및 항행정지 등의 처분) ①해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우수제조사업장·우수정비사업장 또는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선박의 감항성·인명의 안전을 위한 시설 및 항행상의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확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선장·선

박소유자·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자 및 형식승인을 받은 자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해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소유자·선장 또는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선박의 감항성·인명의 안전을 위한 시설 및 항행상의 위험방지조치에 관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해운관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항행정지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선박승무원에게 결함신고의무 부과

제13조(선박승무원의 결함신고와 처분) ①선박의 승무원이 당해 선박의 감항성 또는 거주설비, 위생설비 기타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취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운관청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신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위험물의 운송시 안전유지의무 부과

제16조의2(위험물 등의 운송 등) ①선박에 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는 항행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운송 또는 저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및 특수화물의 종류와 그 용기·포장, 적재·운송 및 저장의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해운항만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에 관한 업무를 해운항만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 유선및도선업법

- 유선사업자 등에게 안전운항의무 부과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의무) ①유선사업자 및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유선사업자 및 선원은 음주·약물중독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유선사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 유선의 경우에는 승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유선승객의 준수사항 법정

제13조(유선승객의 준수사항) ①유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유선의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유선사업자·선원 기타 종사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기타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3. 제12조제4항제6호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인명구조용장비나 기타 유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5. 제12조제4항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③제12조제2항, 동조제4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유선을 조종하는 경우에 그 승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도선사업자 등에게 안전운항의무 부과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의무) ①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 및 적재물에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음주·약물중독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도선의 경우에는 승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선승객의 준수사항 법정

제19조(도선승객의 준수사항) ①도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은 도선의 승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선사업자”는 “도선사업자”로, “유선”은 “도선”으로 보며, 제13조제2항제3호중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은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선”으로 본다.

- 유·도선사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수립의무 부과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유·도선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3월말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유·도선사업자에게 안전교육실시의무 부과

제24조(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①유·도선사업자, 선원 기타 종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유·도선사업자는 선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안전점검 및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가능

제26조(검사 등) ①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 대하여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상항목 기타 안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등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7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승선정원이나 적재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2.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3. 영업시간 또는 운항회수의 제한
4.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5. 유·도선 또는 유·도선장시설의 개선 또는 변경
6. 대선료·승선료 또는 운임과 운송약관의 변경
7. 다른 유·도선사업자와의 공동운항, 설비의 공용 또는 비용의 공동계산

(라) 항공법

- 비행장치의 안전기준 법정

제15조(감항증명) ①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 비행등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하여서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을 함에 있어서 항공기가 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한 후 당해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2.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항공기

3. 외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제작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은 항공기

⑥교통부장관은 제19조제1항 또는 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항공기의 안전성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제20조(예비품증명) ①소유자 등은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장비할 발동기·프로펠러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장비품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예비품증명을 받을 수 있다.

②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개조에 관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은 장비품과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의 수리사업자가 감항성이 있다고 인정한 장비품으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장비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품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품증명에 있어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특정한 형식의 장비품에 대한 수리 또는 개조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은 자가 당해 형식의 장비품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품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예비품증명을 받은 장비품이 수리 또는 개조되거나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에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예비품증명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품증명의 신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품의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능력의 인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품의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 및 예비품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발동기 등의 정비) 소유자 등은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장비하는 발동기·프로펠러 기타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장비품을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개조) 소유자 등은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를 정비(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비를 제외한다) 또는 수리·개조(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개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제26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가진 자에 의하여 당해 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를 항공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대한민국의외의 지역에서 항공기를 정비하는 경우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①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초경량비행장치의 등록·관리 및 안전기준과 이를 사용하여 비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마) 항공기운항안전법

- 기장에게 안전을 위한 행위저지권한 부여

제5조(기장의 권한) ①기장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고, 인명재산에 위해를 주며, 기내의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기내의 규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항공기내에 있는 자는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기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기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를 구속한 경우 항공기가 착륙한 때에는 구속된자가 구속된 상태로 계속 탑승을 동의하거나 하기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구속한 상태로 이륙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자동차운수사업법

- 안전수송을 위한 사업개선명령 가능

제25조(사업개선명령) 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에 계기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안전수송의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9. ~ 11. (생략)

(사) 육운진흥법

- 안전운행 등에 관한 육운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육운진흥기본계획) 정부는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육운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자동차검사정비 및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6. ~ 7. (생략)

(아) 철도법

- 열차운행 일시중지 가능

제9조의2(열차운행의 일시중지) 철도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을 일시중지 할 수 있다.

1. 폭우·해일 등에 의한 산사태 또는 노반유실등으로 인하여 선로시설의 파손이 우려될 경우
2. 악천후에 의한 열차운행상의 장애로 인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3. 기타 열차운행상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 도시철도법

- 이용자안전을 위한 조건부과 가능

제4조(사업면허 등) ①도시철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양도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철도건설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공작물 신·개축 등 조치 가능

제5조(토지수용법에 대한 특례) ① ~ ②(생략)
③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때에는 소유자 등은 보상 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안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 안전성확보를 위한 사업개선명령 가능

제16조(사업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운송약관의 변경
2. 운임의 조정
3. 도시철도의 차량 기타 시설의 개선
4. 운행시간·운행횟수 등 운행계획의 변경
5. 도시철도노선의 연결운행

(차) 삭도·궤도법

- 안전운행위반시 면허취소 등 조치가능

제16조(면허의 취소 등) ①교육부장관은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시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면허 또는 인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
 2. 삭도 또는 궤도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신청기간내에 그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때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를 사용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검사 가능

제27조(안전검사) ①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 교통부령이 정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의 검사교육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실시하는 검사
2. 시설변경검사 :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시설의 변경을 완료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3. 임시검사 :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고 그 개선을 완료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삭도 및 궤도시설이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교

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명할 수 있다.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삭도 및 궤도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최고를 받고도 당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삭도 및 궤도
- ⑤교통부장관은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카) 여객자동차터미널법

- 사업자에게 안전조치의무 부과

제20조(사업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송사정 기타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 및 변경
2. 사용약관·사용요금 또는 이용규정의 변경
3.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및 안전등을 위한 조치
4. 종업원의 교육 등 자질향상을 위한 조치
5.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수요가 수송력공급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기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파) 화물유통촉진법

- 이용자안전을 위한 사업개선명령가능

제33조(사업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교통여건 기타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원활한 화물의 유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의 변경
2.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
3. 한시적으로 화물이 급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적합한 조치
4. 기타 화물터미널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

(2) 기타 사업 및 시설이용관계

(가) 의료법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기준 적합성 확보의무 부과

제32조의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①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실시·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부과

②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 승강기이용자에게 안전수칙준수의무 부과

제16조(승강기이용자의 의무)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용도외의 사용금지
2.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
3. 기타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승강기의 자체검사 및 유지·보수의무 부과

제17조(승강기의 자체검사) ①승강기의 소유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승강기의 소유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결과 당해 승강기가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를 할 때까지 그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자격및사격장단속법

- 사격장사용제한 등 조치가능

제19조(사격중지) 허가관청은 위해방지 기타 공공의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격장설치자에 대하여 사격장사용의 제한이나 사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체육시설업자에게 안전기준준수의무 부과

제27조(안전·위생기준)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원배치·수질관리 등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가능

제33조(시정명령) 시·도지사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부지면적의 제한을 위반한 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 5. (생략)
6.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한 때
7.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마) 청소년기본법

-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법정 및 시정조치 가능

제2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등)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등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시정명령) 문화체육부장관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바) 도시공원법

- 관리자에게 공원시설 안전성확보를 위한 정기점검조치의무 부과

제6조의2(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공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가능

제45조(공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관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의 방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의 방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공해관리·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다. 제조물소비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재해관계법령

(1)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의 안전권 규정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행정청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 가능

제6조(위해의 방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주관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 등 그 중요한 내용
2.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주관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제1항의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수거하여 파기할 수 있다.

- 안전성 시험·검사시설의 설치

제13조(시험·검사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과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업표준화법

- 공업진흥청장의 안전에 관한 시험실시 가능

제24조(시판품조사) 공업진흥청장은 유통과정에서의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 제품의 품질수준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규격표시품중 소비재 또는 안전 및 위생관련 제품의 품질에 관한 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3) 품질경영촉진법

- 공업진흥청장의 공산품 안전검사 가능

제17조(안전검사) ①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이하 "안전검사대상공산

품"이라 한다)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안전검사의무자"라 한다)는 공업진흥청장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검사기준 고시

제18조(안전검사의 기준 등) ①공업진흥청장은 안전검사의 기준을 공산품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그 기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공산품별로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 및 종류
2. 성분·성능·규격 기타 안전에 관련된 사항
3. 검사방법
4. 표시사항 및 방법

- 안전검사미필 공산품의 판매금지 가능

제19조(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산품의 판매금지 등) ①안전검사의무자,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판매, 판매를 위한 수입·진열·보관 또는 운반이나 영업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안전검사의무자·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 품질경영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3조(품질경영심의위원회) ①공업진흥청에 공업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품질보증체제인증·품질표시 및 안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검사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보고징수·검사실시가능

제24조(보고·검사) ①공업진흥청장은 품질표시 및 안전검사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조·수입·판매 및 영업목적의 사용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품질표시의무자
2.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3. 안전검사의무자
4.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5.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 안전을 위한 수출검사대상물품 고시

제7조(자율검사의 예외) ①공업진흥청장은 국제협약에 의한 필요에 따르거나 인체의 안전에 대한 위해와 관련하여 수출검사가 요구되는 수출품(이하 "검사품목"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품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무역업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품목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수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검사품목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은 수출할 수 없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사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5)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안전기준 법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형식승인·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중하며,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개선명령가능

제23조(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 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운행에 저해되는 부착물 및 장식의 제거
2. 식별하기 곤란한 등록번호표의 교체 또는 개선
3.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의 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6)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제도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①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갖추고 당해 건설기계형식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형식승인을 얻은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 등”이라 한다)가 건설기계의 제작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및 그과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 등을 한 건설기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7) 농업기계화촉진법

-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농업기계화기본계획) ①농수산부장관은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의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의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검사에 관한 사항
6.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자금지원 등 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가능

제16조(안전관리) 농수산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안전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라.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재해관계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부과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②관리책임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③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부과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이상으로 하거나 개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절차 및 지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신고의무 부과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신고 등)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상 조치 가능

제23조(안전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유해작업 도급금지

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 ①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

조치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에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절차, 지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유해기계·기구 등 검사

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①노동부장관은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주문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주문을 한 경우에는 주문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제조·수입·진열·사용·대여 또는 판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사용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안전·보건진단의무 부과

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안전·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장·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시설 기타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9조제1항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예방시설 설치

제61조(산업재해예방시설) 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연구 및 교육시설
2. 작업환경의 측정과 안전·보건진단을 위한 시설
3.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복지사업 실시

제28조의2(근로복지사업) ①노동부장관은 재해의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 가. 요양 또는 외과후 처치에 관한 시설
 - 나.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 다. 재해예방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 또는 재해의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게 하거나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노사협의회법

-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사항에 포함

제20조(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 4. (생략)

5.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7. (생략)

(4) 한국산업안전공단법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설립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산업재해 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이하 "산업안전"이라 한다) 기술지도 및 교육, 유해위험설비의 진단 및 검사 등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광산보안법

- 노동부장관의 광업조업의 안전에 관한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권고가능

제19조(주무관청) ①광업보안의 감독에 관한 사무는 상공자원부장관이 관장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광업종업원의 안전과 보호에 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6) 수산업법

- 어업감독공무원의 안전조업조치 가능

제62조(어업감독공무원) ①어업감독공무원은 어업조정·안전조업 및 불법어업방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을 명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어업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검사에

장해가 되는 물건을 이전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어업감독공무원의 자격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어선법

- 수산청장의 어선안전조업을 위한 조사·연구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조정과 어선의 등록·검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향상을 통하여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어선의 조사·연구) 수산청장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8) 국가공무원법

- 안전기준 설정

제52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방공무원법

- 안전기준 설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군무원인사법

- 안전기준 설정

제20조(능력증진) ①군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증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군무원의 근무능력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휴가·안전보호·후생복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소년원법

- 직업훈련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시행의무 부과

제38조(안전관리) ①소년원장은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보호소년에게 해롭거나 위험한 일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소년원장은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기계, 기구, 재료 기타 시설 등에 의하여 보호소년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경륜·경정법

- 안전조치 법정

제19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주하는 선수·심판 기타 경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관련법령

(1) 재해구호법

제1조(목적) 본법은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호의 대상) 본법에 의한 구호는 한해·풍해·수해·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내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발생하여 응급적인 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 이를 행한다.

제3조(구호기관) ①구호는 이재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행한다.
②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구호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구호조직을 확립하여 상시재해예방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구호하여야 한다.

제4조(재해구호대책위원회) ①본법에 의한 재해구호사업의 기획 조사 기타 구호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 도에 각각 재해구호대책위원회를 둔다.
②재해구호대책위원회의 조직·운영·심의사항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서울특별시와 도는 구호경비의 지변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와 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의 범위내에서 본법에 의한 구호경비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제17조(수입금의 편입) 재해구호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2) 풍수해대책법

- 예방 및 수습체계가 풍수해대책법에 규정됨

- 관리대상 :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등
- 관리체계 : 내무부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두어 운영

※ 중앙재해대책본부(풍수해대책법 제17조)

- 구성 : 위원장 (내무부장관)
 위 원 (13개부처 차관, 민간전문위원 8)
- 기능 : 재해응급대책 총괄 조정, 재해상황 조사 및 복구

(3)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라 함은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조해·설해·동해·병충해 기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라 함은 이상조류·적조현상, 태풍·해일 기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물양식 및 어업시설물의 피해를 말한다.
4. ~ 10. (생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실시 의무

제3조(재해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실시한다.

1. 재해의 예방을 위한 장비·기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의 발생시의 농업용시설·농경지·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대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보조 및 지원

제4조(보조 및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풍수해대책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재해의 예방·피해의 경감·재해의 복구 및 지원의 조치를 받은 농가 및 어가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행하는 보조 및 지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해대책의 경우

가. 양수를 한 때에는 그 양수에 소요된 유투대금 및 전기료

나.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다. 양수용 펌프 및 관정의 시설비

2. 농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 농약대금

3. 농작물을 대파하는 경우 :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4. 유실 또는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 복구비

5. 유실 또는 파손된 농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 시설비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에 갈음하여 입식하는 경우 : 어린 가축의 입식비

7. 유실 또는 매몰된 초지를 복구하는 경우 : 복구비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 사육비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

가. 이재민의 구호

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자금의 상환기한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양곡의 지급 등

10. 기타 지원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행하는 보조 및 지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이상조류 또는 적조현상으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

가. 종묘대금 또는 치어대금

나.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2.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

가. 이재민의 구호

- 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감면
- 다. 영여자금의 상환기한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 라. 정부양곡의 지급 등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풍수해대책법을 준용하되, 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제5조(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등) ①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에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청에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응급조치

제7조(응급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의 토지·가옥·시설 또는 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대책명령서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수용법에 의한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 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수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 기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의 요구를 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제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산림법

제114조(재해에 대한 보상) 정부는 한해·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양묘사업(정부가 지정하는 양묘사업에 한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5) 담배사업법

제7조(재해보상금의 지급) ①공사는 경작자가 연초를 옮겨 심은 후 수매전에 풍해·수해·우박피해·한해 또는 병충해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를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의 일부에 대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해가 발생한 경작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를 고의로 크게 한 경우

2. 제9조에 의하여 공사가 지도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연초를 경작한 경우

②공사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후 1년 이내에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6) 인삼사업법

제9조(경작지원) ①인삼경작자가 인삼을 옮겨심은 후 수확전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공사는 그 손해의 일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사는 경작방법의 개량 또는 생산성의 향상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인삼경작자 또는 인삼경작자단체에 대하여 장려금 또는 장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인삼경작자에 대하여 인삼경작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공사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삼의 수매전이라도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경작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의예방·수습에관한훈령

I.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재해의 예방과 수습에 대한 종합적·체계적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풍수해대책법의 적용을 받는 재해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해를 제외한 각종 사고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II. 사고 수습

제3조(수습주무부처 지정) ①각종사고로 인한 재해수습의 주무부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화재사고 : 내무부
2. 가스, 전기사고 및 광산사고 : 상공자원부
3. 건축공사, 도로, 교량, 하천, 제방 등 붕괴사고 : 건설부
4. 유독물 등 수질오염사고 : 환경처
5. 방사능사고 : 과학기술처
6. 항공기사고 : 교통부
7. 열차사고 : 교통부(철도청)
8. 선박, 해난사고 : 교통부(해운항만청)
9. 산불사고 : 농림수산부(산림청)
10. 자동차, 해양오염사고 : 내무부(경찰청)

②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고의 주무부처는 정부조직법 및 직제 등 관련규정에서 당해 기능을 관장하는 부처가 되며, 여러부처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가장 관련이 많은 부서를 주무부처로 지정한다.

제4조(사고의 구분) ①사고수습 및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고유

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형사고 :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전 정부적인 종합적 대처가 필요한 사고
2. 중형사고 : 대형사고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주무부처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처가 필요한 사고
3. 소형사고 : 피해정도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고

②주무부처의 장관은 사고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제1항의 사고유형을 판단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제5조(대형사고 수습체제) ①대형사고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중앙사고대책협의회를 설치한다.

②중앙사고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재해상황조사 및 복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에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한다.

④중앙사고대책본부장은 주무부처의 장관이 되며 경제기획원차관, 내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보건사회부차관 및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⑤사고가 발생한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한다.

⑥지역사고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되며, 시·도등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주무부처공무원, 당해 지역군부대장, 복구책임기관 관계자, 사고원인제공자 대표, 피해자 대표 및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자로 구성한다.

⑦중앙 및 지역사고대책본부는 필요에 따라 총괄반, 의료대책반, 복구지원반, 보상반 등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중형사고 수습체제) ①중형사고대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에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한다.

②중앙사고대책본부장은 주무부처의 차관 또는 청장이 되며, 관계부처의 실,

국장, 관련업체의 대표 및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자로 구성한다.

③사고가 발생한 시·도에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한다.

④지역사고대책본부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주무부처 공무원, 당해지역 군부대장 및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자로 구성한다.

⑤중앙사고대책본부는 사고의 성격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소형사고 수습체제) ①소형사고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조치와 사고수습을 하고 주무부처장관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사고원인제공자 등으로 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

제8조(응급조치) 시·도지사는 대형사고 또는 중형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부처장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역사고대책본부위원을 소집하여 사태수습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다만, 사태가 긴급하여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인력 및 장비 등을 동원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지원) ①중앙사고대책협의회위원 및 대책본부의 위원은 회의소집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 및 지방 사고수습대책본부장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역 군부대장은 중앙 및 지역사고대책본부장으로부터 응급조치 및 사고수습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Ⅲ. 사고예방

제10조(재해예방대책협의회) ①각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반대책마련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자치구인 구에 한한다)에 재해

예방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유관기관장, 관계전문가 등으로 한다.

③협의회는 년 2회(상·하반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개최 할 수 있다.

제11조(재해유형별 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재해유형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각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총괄은 시·도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그 재해와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실·국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업계 대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④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제12조(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가능) ①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단위 종합방재계획 수립 및 심의
2.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계기관 협의사항
3. 취약지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반 편성, 운영
4. 기타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시·도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내무부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2회 정기 또는 필요시 수시확인 점검할 수 있다.

②시·도 재해예방 총괄부서에서는 재해예방 관리 종합상황을 내무부 및 관계 중앙행정부처에 정기 또는 필요시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안분석 94-4 안전관계법령의 현황과 개선방안

1994년 12월 25일 印刷

1994년 12월 31일 發行

發行人 張 明 根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한국컴퓨터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값 3,000 원

